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태모 의원 외 5명
제출연월일	2023. 5. 16.

논산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73호
----------	------

발의연월일 : 2023. 5. 16.

대표발의자 : 이태모

공동발의자 : 김남충, 조배식,
조용훈, 서승필,
허명숙

1. 제안이유

논산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을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취약지역의 선정 기준 (안 제4조)
- 다. 사업추진 범위 (안 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나. 입법예고 : 2023. 5. 16. ~ 5. 20.(5일간)

□ 조례안

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

논산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 및 관련 단체가 취약지역으로 제안한 지역 등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
2. 안전시설물의 설치
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4.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충청남도 안심귀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관련부서의 협조) 안심귀가 환경조성 관련 사업추진 부서는 총괄부서(본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의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이태모 의원 외 5명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